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2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남인순·전진숙·윤종군

김남희 • 박희승 • 백승아

김현정 • 이재관 • 김성회

정동영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항 후단 중 "시·도당창당승인취소"를 "시·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를 "시·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 외의"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시·도당창당승인취소"를 "시·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당 및 시·도당"을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에 있어서 당해"를 "선거가실시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 중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를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

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지역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관할 읍·면·동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시·도당"을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중앙당 또는 시·도당"을 "중앙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를 "(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및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로,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대표자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로,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대표자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4조제1항 단서 중 "시·도당"을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政黨의 黨員인 者는 無所屬	6
候補者로 登錄할 수 없으며, 候	
補者登錄期間 중(候補者登錄申	
請시를 포함한다) 黨籍을 離脫	
・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選擧	
에 候補者로 登錄될 수 없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	
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u>시・도</u>	<u>시·도</u>
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黨員	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
資格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u>당승인취소</u>
같다.	.
⑦ ~ ⑮ (생 략)	⑦ ~ ⓑ (현행과 같음)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
경의 금지) ① 政黨은 候補者	경의 금지) ①
登錄후에는 登錄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	
補者名簿(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수 없다. 다만, 候補者登錄期間중 政黨推薦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所屬政黨의 除名이나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의 다음으로 한다.

② (생 략)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錄 7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한다.

- 1. ~ 5. (생략)
- 6. 政黨推薦候補者가 黨籍을 離 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錄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시·도당창당승인취
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
외의
<u>.</u>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1. ~ 5. (현행과 같음)
6
\] •
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

7. ~ 11. (생략)

② ~ ④ (생 략)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各號에 따라 選擧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 ⑦ (생 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u> 당장당승인취소</u>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①
<u>중앙당,</u> 시·도당
<u>및 지역당</u>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
치) ①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
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 를 설치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 ⑦ (생 략)
-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第 (생 략)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
 -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 마. (생 략)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 하는 당직자회의(구·시· 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 급 간부와 시·도수의 10 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읍·면·동단위 이상 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시·도당의</u>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읍•면•동단위 이상
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u>관할</u>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 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 파. (생 략)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 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u>시·</u> 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생략)

- 의례적 행위
 가. (생 략)
 - 나. 정당의 대표자가 <u>중앙당</u>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 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 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 부를 포함한다)·그 배우

	또는 지역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관할
	읍·면·동의 수에 상당하
	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
	하는 회의를 말한다)
사	. ~ 파. (현행과 같음)
하	
	 도당 또는 지역당
괴	 . (현행과 같음)
/ 	. (연%가 乍吉)
가	. (현행과 같음)
´' 나	
,	· <u> </u>
	(중
	<u>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u>
	도당 및 지역당의 대표자
	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며.

2.

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 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 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도당 <u>대표자를 포함한다)</u> 에게 연말·설·추석·창 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 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 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 파. (생 략)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政黨은 選舉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u>시·도</u>당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시·도당 대표자의 경우</u>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u> 간부를 포함한다)</u>
대표자를 포함하며,
시・도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 대표자를 포함한다
다. ~ 파.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
<u>시·도</u>
<u>당 또는 지역당</u>